법령 [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- 문 1. (가) ~ (다)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이고, 甲 ~ 丁은 그 권한을 가진 자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甲은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아 확정한 (가)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였다.
 - 乙은 甲으로부터 통보받은 <u>(가)</u>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(나)에 관한 협의에 응하였다.
 - 丙은 甲에게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의 변경을 요청 하였다.
 - 丁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(다)을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.
 - ① 甲이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(가)의 용어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
 - ② 확정된 (나)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안을 작성하여 甲에게 제출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丙이 통계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乙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④ 丁이 단순한 문구 수정 등 (다)의 일부를 보완한 때에도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- ① 乙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甲은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.
 - ② 乙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B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- ③ 甲은 B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 乙에게 미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.
 - ④ 乙이 甲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문 3.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 건설기계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, X시에 거주하는 A의 소유자 甲에게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 - ¬. 甲에게 송달된 고지서에는 품목, 규격, 수량 및 지정에 따른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만 인도・인수 장소는 그렇지 않다.
 - 니.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하기 위해 A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甲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 - 다. 甲이 자신에게 송달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시켜 그 효용을 훼손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己. 국토교통부장관은 A의 노후화로 인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甲에게 그 지정해제의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.
 - ① 7, ಒ
 - ② ¬, ₴
 - ③ ∟, ⊏
 - ④ □, ㄹ
- 문 4. 중점관리대상업체 A 방송사 및 이에 종사하는 중점관리대상인력 甲이 참여하는 동시관리훈련이 2022. 3. 25. 1일간 실시되었다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- ① 甲에게는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.
 - ② 甲이 2022. 3. 25.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 훈련의 대상이 된 경우에 예비군 훈련이 우선한다.
 - ③ A의 장은 甲이 참여한 훈련기간을 휴무로 정하여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.
 - ④ 훈련으로 인해 甲이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.

- 문 5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- ①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
 -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④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-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 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·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로 실시하는 정부연습을 위해서 업체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.
 - ③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수량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주무부장관은 긴급한 경우에 정부 비축물자의 비축을 해제한 후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- 문 7. 대통령 甲, 국무총리 乙 및 행정안전부장관 丙 등으로 구성된 정부는 비상 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국 훈련을 실시하고자 한다. 비상대비자워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- ①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의 실시명령은 丙이 관계 주무부장관과 그 훈련의 방법·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乙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 - ②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중 56세 이상인 사람(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) 중 丙이 인정하는 사람은 비상대비 훈련을 면제한다.
 -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丙에게,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丙이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乙에게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문 8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 - ㄱ.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 기간은 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- ㄴ. 훈련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
 - 다. 시·도지사등이 발부하는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)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지만,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.
 - 리.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·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· 손괴·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① ¬, ∟

② 7, ⊏

③ ∟, ⊒

④ □, ⊒

문 9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에 대한 사례의 설명으로 <보기>의 (가)~ (라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甲은 아버지 乙과 함께 군부대가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에 참가하였다. 甲은 위 훈련에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자신 소유의 값비싼 준설선 (浚渫船)을 훈련대상물자로 제공하였고, 乙은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으로서 훈련에 참가하였다. 그런데 乙은 안타깝게도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사망하였다. 설상가상으로 훈련 도중 거센 호우로 甲의 준설선이 전복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다.

一 < 보 기 > 一

- 甲은 (가) 의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는다.
- (나) 은 甲에게 준설선의 멸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- 甲의 준설선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(다)이다.
- 준설선에 대한 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甲은 (라)을/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	<u> (フト)</u>	<u>(나)</u>	<u>(다)</u>	<u>(라)</u>
1	전몰군경	국방부장관	5년	보상금 지급
2	순직군경	국방부장관	5년	보상금 지급통지서
3	순직군경	행정안전부장관	3년	보상금 지급통지서
4	전몰군경	행정안전부장관	3년	보상금 지급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- 문 10.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「민방위기본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는 중앙민방위 협의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포함된다.
 - ② 교육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가정보원장 및 소방청장은 중앙민방위 협의회의 위원에 포함된다.
 -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,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
 - ④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